

2005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및 의견서

2005년도 평창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06. 5. 3~5. 22(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신교선(총괄)
 - 검사위원 : 김시한(채권·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 검사위원 : 김진석(일반·특별회계 세출일반)
 - 검사위원 : 김창길(일반·특별회계 세입일반)
 - 검사위원 : 정장용(일반·특별회계 세출일반)

평창군결산검사위원

2005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평창군수 귀하

2006년 5월 23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로부터 평창군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6년5월3일부터 2006년5월22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을 포함한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제반법규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제46조, 제47조
- 지방재정법제41조, 제42조, 제110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8~40조
-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
-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7조

2. 검사기간 : 2006. 5. 3 - 5. 22(20일간)

3. 위원별 검사분야

- 대표위원 신교선 : 결산총괄
- 위 원 김시한 : 채권·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금고결산
- 위 원 김진석 : 일반·특별회계 세출일반
- 위 원 김창길 : 일반·특별회계 세입일반
- 위 원 정장용 : 일반·특별회계 세출일반

4. 검사방법

-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 실시
- 계수의 과오 여부를 증빙서류와 상호대조 검사

5.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

1) 세입분야

- 결산서와 징수부 대사
-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의 적정성
- 체납액 정리 및 미수납액 관리의 적정성
- 결손처분의 적정성
- 여유자금의 적정한 관리 및 이자수입의 증대노력

2) 세출분야

- 결산서와 지출장부의 대사
- 법제, 원칙 등에 입각한 적정한 지출여부
-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적정여부
- 예산전용 및 불용처리의 타당성
- 예비비 운영의 적정성
-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3)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 결산서와 세입징수부, 지출장부 대사
- 주택융자금 관리
- 국공유재산, 대부재산 등 재산의 성실한 관리 여부
-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상태

6. 검사결과 및 의견서 : “별첨” 과 같음.

2006년 5월 23일

대표검사위원 신 교 선



검 사 위 원 김 시 한



검 사 위 원 김 진 석



검 사 위 원 김 창 길



검 사 위 원 정 장 용



2005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목 차

1. 세입세출 결산총괄	
1) 세입	7
2) 세출	8
2. 일반회계	
1) 세입	9
2) 세출	9
3. 특별회계	
1) 세입	10
2) 세출	11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1) 기금	12
2) 채권	12
3) 채무	13
4) 공유재산	13
5) 물품	14
5. 세입·세출외현금	14
6. 검사결과	15
7.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18
8. 지적사항 처리계획	48

2005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2005연도의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회계별 예산 규모 및 세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세출 결산총괄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 년 도 (2004)	287,224,399,470	301,065,849,234	293,413,124,980	961,805,364	6,690,918,890
당해년도 (2005)	279,849,327,020	287,747,531,923	282,627,235,597	442,234,300	4,678,062,026

가. 세입결산 개요

- 2005년도 실제수납액 282,627,235,597원은 예산현액의 101%로서 2,777,908,577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8%로 나타남.

※ 2004년도

- 실제수납액 : 293,413,124,980원 (예산현액의 102%)
- 징수결정액 : 301,065,849,234원 (예산현액의 105%)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 년 도(2004)	202,285,208,000	84,939,191,470	287,224,399,470	209,575,829,585
당해년도(2005)	215,240,879,000	64,608,448,020	279,849,327,020	206,361,609,295
익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64,608,448,020	13,040,121,865	83,837,295,395	399,839,596	18,829,007,779
64,005,333,720	9,482,384,005	76,265,626,302	627,947,016	11,632,345,566

가. 세출결산의 개요

- 200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4% 증가한 215,240,879,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64,608,448,0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79,849,327,020원임.
- 지출액은 206,361,609,295원으로 예산현액의 73.74%임
이월사업비 중 자금 없는 이월액은 없었으며,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 현액대 비율
		계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당해연도 (2004)	287,224,399,470	136건 64,608,448,020	64건 22,108,945,190	40건 5,654,113,070	32건 36,845,389,760	22%
당해연도 (2005)	279,849,327,020	184건 64,005,333,720	90건 29,716,626,140	58건 7,508,581,030	36건 26,780,126,550	22%

- 3)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에 해당하는 9,482,384,005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632,345,566원으로 예산현액의 4.1%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 년 도 (2004)	223,761,093,730	237,223,692,822	232,870,391,512	625,094,640	3,728,206,670
당해연도 (2005)	219,248,448,900	227,103,484,610	222,325,667,334	438,983,640	4,338,833,636

가.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은 222,325,667,334원으로 예산현액의 98%이고
징수결정액은 227,103,484,610원으로 예산현액의 101%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7.8%임.

※ 2004년도

- 실제수납액 : 232,870,391,512원 (예산현액의 104%)
- 징수결정액 : 237,223,692,822원 (예산현액의 106%)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 년 도(2004)	167,728,667,000	56,032,426,730	223,761,093,730	180,681,865,150
당해연도(2005)	185,493,055,000	33,755,393,900	219,248,448,900	164,409,906,255
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33,755,393,900	9,323,834,680	52,188,526,362	320,581,906	18,112,550,556
47,502,080,900	7,336,461,745	57,915,761,079	603,744,666	9,809,935,513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185,493,05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3,755,393,9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19,248,448,900원임
- 이월사업비는 총 144건에 47,502,080,900원으로 예산현액의 21.6%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 현액대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04)	223,761,093,730	104건 33,755,393,900	60건 21,027,280,660	37건 5,595,854,070	7건 7,132,259,170	15%
당해연도 (2005)	219,248,448,900	144건 47,502,080,900	81건 26,498,907,110	56건 7,359,747,030	7건 13,643,426,760	21%

3. 특별회계 세입·세출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 연 도 (2004)	63,463,305,740	63,842,156,412	60,542,733,468	336,710,724	2,962,712,220
당해연도 (2005)	60,600,878,120	60,644,047,313	60,301,568,263	3,250,660	339,228,390

가.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은 60,301,568,263원으로 예산현액의 99.5%이며, 징수결정액은 60,644,047,313원으로 예산현액의 100.0%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9.4%임.

※ 2004년도

- 실제수납액 : 60,542,733,468원 (예산현액의 95.3%)
- 징수결정액 : 63,842,156,412원 (예산현액의 100.5%)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 년 도(2004)	34,556,541,000	28,906,764,740	63,463,305,740	28,893,964,435
당해년도(2005)	29,747,824,000	30,853,054,120	60,600,878,120	41,951,703,040
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30,853,054,120	3,716,287,185	31,648,769,033	79,257,690	716,457,223
16,503,252,820	2,145,922,260	18,349,865,223	24,202,350	1,822,410,053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29,747,82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60,600,878,120원임.
- 이월사업비는 총 40건에 16,503,252,820원으로 예산현액의 27.2%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 현액대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04)	63,463,305,740	32건 30,853,054,120	4건 1,081,664,530	3건 58,259,000	25건 29,713,130,590	48.6%
당해년도 (2005)	60,600,878,120	40건 16,503,252,820	9건 3,217,719,030	2건 148,834,000	29건 13,136,699,790	48.6%

※ 특별회계 이월사업 현황임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1) 기금

(단위 : 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2004)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2005)
		계	수납액	지출액	
계	2,494,723,770	567,837,479	731,132,959	163,295,480	3,062,561,249
재난관리기금	485,735,450	300,082,910	404,778,390	104,695,480	785,818,360
사회복지기금	1,947,420,292	250,530,450	309,130,450	58,600,000	2,197,950,742
식품진흥기금	61,568,028	17,224,119	17,224,119	-	78,792,147

가. 기금결산의 개요

-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3개로
기금현재액은 2004년도 2,494,723,770원 보다 567,837,479원이 증가된
3,062,561,249원을 관리하고 있음.

2) 채권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2004)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2005)
합 계	3,136,243,246	189,428,690	1,950,252,410	1,375,419,526
일반회계	-	-	-	-
주택사업	1,470,454,226	-	772,706,680	697,747,546
의료보호기금	252,270	-	252,270	-
사회복지기금	1,665,536,750	189,428,690	1,177,293,460	677,671,980

가. 보유채권 현재액은

- 2004년말 현재액 3,136,243,246원에서
- 2005년도에 189,428,690원이 발생, 1,950,252,410원이 소멸되어
- 2005년도말 현재액은 1,375,419,526원임.

3) 채 무

(단위 : 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14,131,578,000	△5,433,954,000	-	5,433,954,000	8,818,750,000	
일 반 회 계	5,064,523,000	△3,583,691,000	-	3,583,691,000	1,480,842,000	
특 별 회 계	소 계	9,067,055,000	△1,850,263,000	-	1,850,263,000	7,337,908,000
	상수도사업	8,683,000,000	△1,381,600,000	-	1,381,600,000	7,301,400,000
	주택 사업	384,055,000	△468,663,000	-	468,663,000	36,508,000

※조정액 : 일반회계 △10,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21,116,000원

가. 평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 2004년도말 현재액 14,131,578,000원에서
- 2005년도에 5,433,954,000원을 상환하여
- 2005년도말 현재액은 8,818,750,000원임.

4) 공유재산

○ 용도별 현황

(단위 : 원)

구 분 용도별	2004년말현재액	2005년말현재액	증감(△)	
합 계	119,009,589,000	191,854,187,000	72,844,598,000	
행 정 재 산	계	85,312,179,000	146,843,461,000	61,531,282,000
	공공용 재산	69,233,308,000	123,145,968,000	53,912,660,000
	공용 재산	14,888,934,000	22,383,005,000	7,494,071,000
	기업용 재산	1,189,937,000	1,314,488,000	124,551,000
보 존 재 산	-	-	-	
잡 종 재 산	33,697,410,000	45,010,726,000	11,313,316,000	

가. 2005년말 현재 공유재산현액은 2004년말 현재액119,009,589,000원에서
72,844,598,000원이 증가한 191,854,187,000원으로

- 토지 126,064,000㎡ 174,855,090,000원
- 건물 65,985㎡ 16,805,404,000원

5) 물 품

(단위 : 천원)

정수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2005년말 현재액
			구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1,058	수량	843	108	-	108	9	10	19	932
	금액	4,651,117	573,368	-	573,368	129,345	39,932	169,277	5,055,208

가. 2005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004년말 현재액 4,651,117,000원보다 404,091,000원이 증가한 5,055,208,000원으로 신규취득 573,368,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69,277,000원이 감소함.

5. 세입·세출외 현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2005년 증감내역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증가액	지출액	
합 계	1,514,376,246	1,060,728,890	5,469,015,583	4,408,286,693	2,575,105,136
부 담 금	-	-	-	-	-
위 탁 금	350,226,742	△178,572,100	414,129,420	592,701,520	171,654,642
보 증 금	313,144,240	548,699,330	703,123,110	154,423,780	861,843,570
일시보관금	729,816,133	624,599,034	2,747,586,372	2,122,987,338	1,354,415,167
잡종금등기타	121,189,131	66,002,626	1,604,176,681	1,538,174,055	187,191,757

가. 2005년도말 현재액은 2,575,105,136원으로 2004년도말 1,514,376,246원보다 1,060,728,890원이 증가함.

※ 2005년도 결산부터 읍·면, 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 포함함

6. 검사결과

□ 총 평

2005년도 평창군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각종 장부 및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검사한 결과 관련공무원들의 꾸준한 법규연찬 및 정확한 결산에 대한 의지로 계수과오는 없었으며, 재무운영의 적법성, 효율성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가. 일반회계기준 세입은 전년대비 4.5% 감소하였으며, 관련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재정보전금 등의 증액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9.7% 증가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나. 세출분야에서는 사업비 확보이전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비 예산편성 이후에는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부당하게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 또는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고원휴양풍치림조성사업등 20건의 세출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등 몇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

□ 주요지적사항

가.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거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또는 수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용처리 함

나. 회계연도 말(11월) 동절기 시작시점에 예산배정을 함으로서 사업시기 촉박 등으로 부득이 예산을 이월시키는 문제점 발생

- 다. 이월사업(명시,사고)은 최소화되어 회계연도내 행정목적이 달성되어야 함에도 사업계획의 확정지연이나 사업계획 변동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관행처럼 매년 반복되는 것은 지양 되어야 함

- 라. 승인된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년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며 사업기간 연장등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업계획이 요구됨

- 마. 물품관리소홀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 체납액 및 세외수입에 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지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산 불일치 자료도 조속히 정리 하여야 할 것임

- 바. 소규모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추진이 적기에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읍·면에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함에도 군 관련부서에 계상한 후 재배정 추진하는 것은 행정 능률을 저해하고 있으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음

- 사.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행정이며 특히 예산승인시 의결한 미탄 쓰레기 매립장 지원사업을 대화쓰레기 매립장 지원사업으로 부당하게 사고이월 처리하여 예산을 편법 운영한 것은 당연시정 되어야 할 것임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

지 적 사 항 목 록

번호	제 목	담당위원
1	세출예산 비목 중 전액 불용액 발생(각 실과소)	신교선
2	세출예산 집행잔액 관리 미흡 (각 실과소)	신교선
3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과다 발생(각 실과소)	신교선
4	2005년 일반회계 이월사업(각 실과소)	정장용
5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단체의 정산서 제출 (각 실과소)	정장용
6	읍면사업예산을 군본청에 예산계상 후 재배정처리로 능률성저해 (기획감사실)	신교선
7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및 적정집행 미흡(기획감사실)	신교선
8	사회단체 지원금 집행 미흡(기획감사실)	신교선
9	목공예단지 조성사업(기획감사실)	김진석
10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처분 조치 미흡(민원봉사과)	김창길
11	지방세(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한 조치 미흡(재무과)	김창길
12	체납액(기타잡수입)에 대한 관리 소홀(재무과)	김창길
13	군 금고 검사 미이행(재무과)	김시한
14	수석테마공원 조성공사(문화관광과)	김진석
15	덕거 연극인촌 달빛극장 건립공사(문화관광과)	정장용
16	사회복지기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출연금증액)(환경복지과)	김시한
17	대화주민건강관리센터 사업(환경복지과)	김진석
18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예산계상 부적정(환경복지과)	김창길
19	광역쓰레기매립장주변 지원사업비 집행 부당(환경복지과)	신교선
20	진부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지역도시과)	김진석
21	봉평면 오지종합개발 사업(지역도시과)	정장용
22	평창 소도읍 육성사업(지역도시과)	정장용
23	후평재해위험지구 추진사업(재난안전관리과)	김진석
24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조치 미흡(상하수도사업소)	김창길
25	올림픽타운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연 발주(지역도시과)	정장용
26	마지보건진료소 신축공사(보건의료원)	정장용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호 : 1
- 제목 : 세출예산 비목 중 전액 불용액 발생
- 현황
 - ▶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지원 사업 30,000천원 등 20건
154,458천원은 세출예산에 계상 후 전액을 미집행하여 불용처리
- 문제점(개선사항)
 - ▶ 예산수립 후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이 집행사유가 미발생 하였다면 집행부의 예산심사가 미흡하였거나 의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경상 적경비와 소액예산에 대한 관심이 결여된 사항일 것임

※ 감사자 의견

- 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세출예산을 20여건이나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은 건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정행위임
- 예산집행사유가 미 발생하였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삭감 조정하여 시급한 예산에 재편성 운영해야 할 것임.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 호 : 2

○ 제 목 : 세출예산 집행잔액 관리 미흡

○ 현 황

- ▶ 계획변경 및 취소 : 111,996천원
 - ▶ 집행사유 미 발생 : 670,149천원
 - ▶ 예산절감 : 901,015천원
 - ▶ 예산집행 잔액 : 5,206,118천원
 - ▶ 보조금 집행 잔액 : 447,183천원
- 계 : 7,336,462천원

○ 문제점(개선사항)

- ▶ 일반회계 219,248,449천원 대비 3.34%에 해당하는 예산잔액이 발생함
- ▶ 계획변경취소, 집행미사유 등으로 발생한 예산잔액에 대한 재투자되지 않고 있음

※ 감사자 의견

- 당해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계획변경 또는 취소로 인한 예산잔액과 미집행 사유로 인한 예산잔액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편성시 삭감, 수정을 통하여 필요한 군정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건전 재정운영 노력이 요구됨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호 : 3
- 제목 :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과다 발생
- 현황 : 일반회계, 특별 및 공기업특별회계 현황

연도	이월건수	예산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지출잔액	다음연도이월액		
2004	104건	65,454,683,890		43,256,562,720	37,602,449,650	89,175,980	27,763,058,260		
2005	148건	81,022,027,380		50,918,335,430	43,499,298,400	787,065,810	37,225,207,170		
증감	44건	42%	15,567,343,490	24%	7,661,772,710	5,896,848,750	697,889,830	8,972,604,910	34%

○ 문제점(개선사항)

- ▶ 이월사업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행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결과임
- ▶ 행정편의 주의로 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함

※ 감사자 의견

- 당해연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 자체사업비가 최종 추경예산에 계상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함
- 이월사업은 주요사업심사분석을 통해 면밀한 검토 후 대책 수립이 요구됨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호 : 4

○ 제목 : 2005년 일반회계 이월사업

○ 현황

- ▶ 2004년 일반회계 이월사업 104건, 33,755,393,900원이었으나 2005년도 40건, 13,746,687,000원이 증가한 144건, 47,502,080,900원임.
- ▶ 2005년도 일반회계 총 219,248,448,900원의 21.7%에 해당되는 금액임.

○ 문제점(개선사항)

- ▶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이 지연
- ▶ 물가인상 증감(5% 이상)에 따라 3개월마다 사업비 계상
- ▶ 부지매입 감정평가(년1회)결과 전년도 매수자와의 형평성 시비 등으로 민원야기 및 예산낭비 등 협의 곤란

☞ 감사자 의견

○ 행·재정상의 손익을 감안 조기 착공 및 시공을 해야 한다고 사료됨.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 호 : 5

○ 제 목 :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단체의 정산서 제출

○ 현 황

▶ 2005년도 43개단체 61개사업 371,500천원을 보조하였으나 일부 단체의 경우 정산서 작성시 일자별 지출금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보조금 통장과 명세서가 일치하지 않고 있음.

○ 문제점(개선사항)

▶ 보조금 통장 지급명세서, 지급금액등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못함.

⌋ 감사자 의견

○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는 정산서 제출 시 보조금 통장사본 지급내역서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지급사실이 명확히 증명할 필요가 있음.

○ 통장사본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호 : 6

○ 제목 : 읍면 사업예산을 군본청 계상후 재배정처리로 능률성 저해

○ 현황

- ▶ 예산재배정 : 274건 20,583,432천원
- ▶ 사업비 : 173건 18,372,139천원
- ▶ 경상비 : 101건 2,211,293천원

○ 문제점(개선사항)

- ▶ 소규모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추진이 적기에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읍면 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함
- ▶ 모든 사업예산은 군 관련부서에 계상한 후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행정능률성을 저해하고 있음

※ 검사자 의견

-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해야 사업의 적기집행은 물론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것임
- 본 지적 사항은 과년도에도 지적되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음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호 : 7
- 제목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및 적정 집행 미흡
- 현황
 - ▶ 사업비 예산현황 군본청 : 500,000천원
 읍·면분 : 1,600,000천원
 계 : 2,100,000천원
- 문제점(개선사항)
 -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군청과 읍면에 동일 목적으로 이중 계상
 - ▶ 3~5천만이상 규모가 큰 사업비 집행은 예산운영상 지양되어야 함

※ 검사자 의견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후에 수시 발생하는 생활민원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지침 마련이 요구됨
- 5천만원이상 사업비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 비도를 확정 집행함을 타당함
- 사업비 집행이 선심성 예산으로 투영될 수 있으므로 사업선정에 적정성이 요구됨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호 : 8
- 제목 : 사회단체 지원금 집행 미흡
- 현황 : 집행실적

(단위:천원)

심의결정액(A)	1차 지원액(B)	수시지원액(C)	전액 A-B-C
423,740	353,500	18,000	52,420

○ 문제점(개선사항)

- ▶ 사회단체가 요청한 사업비중 심의 결정된 사업을 미 실시 했거나 사업비 잔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음
- ▶ 예산운영의 융통성 문제로 1차 심의결정 후 수시지원토록 하였으나 예산액의 12% 52,240천원 잔액 발생

※ 감사자 의견

- 지원 요청액 심의 결정시 객관성 확보와 면밀 검토가 요청됨
- 지원 단체의 기준이 명확치 않고 지원 기준도 재검토가 요청됨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 호 : 9

- 제 목 : 목공예단지 조성

- 현 황
 - ▶ 예산액 1,000,000천원

- 문제점(개선사항)
 - ▶ 최종예산 계상으로 시기일실

 - ▶ 현 예산으로는 사업 시행 어려움.

⌋ 검사자 의견

- 월정사로 위탁(계획서 제출 요구)시행 협의 중.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호 : 10

○ 제목 :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처분 조치 미흡

○ 현황

▶ 2005년도까지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는 총2,327건에 456,459,800원이 발생되었으나 징수실적은 21%에 불과한 실정임

○ 문제점(개선사항)

▶ 관리 차량수에 비해 관리부서의 과다한 업무로 자동차압류 등 조치 후 납부독려 및 징수관리 소홀

▶ 고질체납자에 대한 가산금부과 등 강력한 제재법규가 미흡하여 이를 악용 자동차 소유권이전 또는 폐차 시까지 자진납부 기피

※ 검사자 의견

○ 자동차관리부서 증원 및 업무 전문화 필요

<첨부>

1. 2005년도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현황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호 : 11

○ 제목 : 지방세(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한 조치 미흡

○ 현황

(단위 : 천원)

예산액 (A)	05.12월 예산액(B)	조정액 (C)	징수액 (D)	결손액	미납액	징수비율		
						A:D	B:D	C:D
13,103,074	13,103,074	15,797,603	13,282,720	34,997	2,514,883	83	83	84

○ 문제점(개선사항)

- ▶ 고질체납 및 부도등으로 인해 미수액 증가
- ▶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노력 미흡

※ 감사자 의견

- 지방세법제30조의3 제1항제3호, 제30조의2 제3호, 제30조의5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 될 때에는 지체없이 결손처분
- 미수액 관리 및 지속적인 현지추적조사 독려로 조기납부 이행촉구
-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확행

<첨부>

1. 고액체납자 명단(지방세, 세외수입)
2. 압류재산 중 공매처분 현황
3.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지독려 현황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호 : 12
- 제목 : 체납액(기타잡수입)에 대한 관리 소홀
- 현황

(단위 : 원)

구분	체납자	물건명	금액(부과)
합계			3,461,900
환경보호과	이천수	생계급여회수	798,730
산림과	이광준	가로수 피해변상금	240,140
산림과	안선옥	속사리 176-11번지외1필	218,650
산림과	(주)보광	무이리 759번지	71,460
봉평면	형용상	홍정리 310번지	1,975,000
도암면	도암면사무소	유천1리 경로당	157,920

○ 문제점(개선사항)

- ▶ 대기업, 행정기관등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에 납부독려가 미흡하여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어 소관부서의 징수의지제고가 요구됨
- ▶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 관련 법규에 의한 채권 확보 및 강력한 징수 조치 결여

※ 검사자 의견

-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와 미납시 채권을 확보 강력한 행정조치 필요

<첨부>

1. 기타잡수입 체납자 명단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 호 : 13

○ 제 목 : 군 금고 검사 미 이행

○ 현 황

▶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제120조 2항 규정 및 평창군 금고 지출 대행
점 계약 제9조(금고검사)에 의거 년1회 이상 또는 수시 금고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세입·세출결산 검사일 현재 미 이행 상태임.

○ 문제점(개선사항)

▶ 인사이동 및 업무과다로 미이행

▶ 군금고 관리 미흡

⌋ 검사자 의견

○ 즉시 검사 이행하여 군금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 호 : 14

- 제 목 : 수석테마공원 조성공사

- 현 황
 - ▶ 수석공원 1석
(거석녹지 118개, 재생고무블럭 730m², 소일콘 포장 880m², 소나무외 10종 3,211주, 잔디식재 11,000m²)

- 문제점(개선사항)
 - ▶ 하천점용 미 허가

 - ▶ 환경성 검토 미 이행

☞ 검사자 의견

- 하천점용 : 05.11.24.허가

- 공사계약 : 05.12.14.

- 착 공 : 06.3.20.경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 호 : 15

- 제 목 : 덕거 연극인촌 달빛극장 건립공사

- 현 황
 - ▶ 사업비 700,000천원(국비 500,000천원, 군비 200,000천원)으로 농촌자연속에 야외공연장 건립

- 문제점(개선사항)
 - ▶ 시설물 위탁운영자(유시어터, 대표:유인촌)의 디자인관련 의견 수렴으로 사업추진 지연
 - ▶ 실시설계용역 지연(2005.7.26.)

☞ 검사자 의견

- 공사 조기발주가 이행되지 않았고 위탁운영자와 협의가 늦어져 이월됨

- 당초예산에 세워진 사업을 하반기에 발주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 호 : 16

○ 제 목 :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출연금 증액)

○ 현 황

▶ 사회복지기금 현황

- ① 여성복지기금 : 5억원(24.4%)
- ② 노인복지기금 : 9억5천만원(46.3%)
- ③ 장애인복지기금 : 5억원(24.4%)
- ④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 1억원(4.9%)

○ 문제점(개선사항)

▶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중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약5%로 타 기금 출연비율보다 불합리함.

☞ 감사자 의견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출연을 증액하여 저소득주민 자녀들이 다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 호 : 17
- 제 목 : 대화주민 건강관리센터 사업
- 현 황
 - ▶ 목욕탕 155평(지상·지하 각1층)
- 문제점(개선사항)
 - ▶ 시설에 대한 지역민의 증설 요구로 이월된 사업

⌋ 검사자 의견

- 계속사업 추진하여 조기완공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 호 : 18
- 제 목 :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예산계상 부적정
- 현 황

<년도별판매수입 대비>

(단위 : 천원)

구 분	2004판매수입	2005판매수입	04/05대비	비고
예산액	970,000	965,568	△4,432	
징수액	1,001,668	556,929	△444,739	

※ 판매수입차액발생 원인

- 100만㎡이상의 관광단지 설치자는 자가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처리토록 하여(폐측법 제5조 제1항)
- 보광휘닉스파크 11억 용평리조트 15억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2000년 6월부터 7년간 사용하기로 평창군과 협약
- 부담금은 2000년부터 5년간 분납하기로 하여 매년 5억원씩의 부담금 납부 기간 종료

○ 문제점(개선사항)

- ▶ 2004년도 보광휘닉스파크와 용평리조트의 부담금 납부기간이 만료 되어 판매수입 5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를 예산편성시 종전대로 계상하므로 세수결함 사유를 가져옴

※ 감사자 의견

- 예산편성시 관련부서의 세입추계에 철저한 검토가 요구됨

<첨부>

1. 협약서 2부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 호 : 19

○ 제 목 : 광역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비 집행부당

○ 현 황

- 미탄 쓰레기매립장 추진내역

- 위 치 : 미탄면 창3리 1010번지 일원
- 시 행 자 : 평창군
- 공사기간 : 2004.6.19. ~ 2007.4.24.
- 공 사 비 : 6,889,090,000원

○ 문제점(개선사항)

- 문제점1

○ 미탄 쓰레기 매립장 추진과정에서 미탄면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법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입지결정고시처분취소 소송,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공사방해중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사지연.

○ 현재 공정율(2006.4.30. 기준) - 23%

○ 사업비 집행 - 1,312,776천원

- 문제점2

○ 문제점1에서 적시한 바와같이 미탄 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지연되어 쓰레기 처리장 미완공으로 인하여 쓰레기 처리의 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 기존 대화 매립장을 재사용하기 위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대화위생매립장 위원회와 협의 후,
 - ① 주변사업지원비 10억원을 지원하였고,
 - ② 재처리 경비가 2년간 10억원이 소요되는 등 20억원의 군비가 낭비됨.

- 문제점 3

- 문제2에서 적시한 주민지원 사업비 10억은 미탄 쓰레기처리장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여 의회의승인을 받은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2005년도 사업이월시 대화 쓰레기 매립장 사업비로 부당하게 사고이월하였고,
- 2006년도에 대화 위생매립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10억원을 지출하였음.

⌘ 검사자 의견

- 지방재정법제47조규정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 지방자치법 제35조규정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 특히, 당초예산 승인 시 의결한 미탄 쓰레기 매립지원사업을 대화 매립장 지원사업으로 부당하게 사고이월 처리하여 예산을 편법 운영한 것은 당연 시정되어야 함.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 호 : 20

- 제 목 : 진부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

- 현 황
 - ▶ 예산액 : 1,088,380천원

 - ▶ 사업량 : 1,644m²(497평)

- 문제점(개선사항)
 - ▶ 토지소유주 미 협의

 - ▶ 감정가격 인상요구

☞ 검사자 의견

- 지속적인 협의로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불편 해소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호 : 21

○ 제목 : 봉평면 오지종합개발 사업

○ 현황

- ▶ 봉평면 창동리 일원 학교용지 보상 및 도로개설 L=325m, B=121m
- ▶ 예산액 527,296천원으로 395,168천원 지출하고 132,128천원 이월됨.

○ 문제점(개선사항)

- ▶ 봉평 도시계획도로로 개설 공사 미 보상 16필지 630,456천원 중 오지 종합개발 사업비로 132,128천원 보상 집행 계획임.
- ▶ 2003년 평가 감정한 금액이므로 2006년도 재평가 감정해야 함.

⌘ 검사자 의견

-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지장물 철거보상비 및 토지보상비는 오지종합 개발 사업비로 집행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 도시계획도로로 개설 사업비로 예산 반영보상비를 지출해야하고 재평가 감정하면 감정수수료는 물론 토지 보상비도 상승될 것으로 우려됨.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 호 : 22

○ 제 목 : 평창 소도읍 육성사업

○ 현 황

- ▶ 사업명 : 중리 다목적 캠핑장 조성, 노성산등산로 및 야생화공원조성 주차공원조성, 중리지구 경관가로 조성사업
- ▶ 위 치 : 평창읍 하리, 중리 일원
- ▶ 예산액 : 5,180,000,000원
- ▶ 지출액 : 1,877,052,170원
- ▶ 이월액 : 3,302,947,830원

○ 문제점(개선사항)

- ▶ 중리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
 -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이상일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등의 규정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및 하천법 제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착수 이전에 하천점용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관련부처 협의 절차 미비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 되었음.
 - 본 사업구간에 대한 수문 및 수리분석, 하천횡단면 등을 재산정 분석하여 기 계획된 시설물 및 면적을 변경하여 05.10.31.일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완료하였으며, 하천점용협의를 '06.04.27.일 완료하여 '06.05.05.일 사업을 재개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06.08.04.일 준공예정임.

- ▶ 노성산 등산로 및 야생화공원 조성사업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에 의거 부지면적이 300,000㎡이상일 경우 교통, 재해 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 교통, 재해 영향 평가용역 추진 중이며, 향후 교통 및 재해영향 평가용역 완료 후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 주차장공원 조성사업
 - 이월금액은 편입토지 보상비 및 지장물 집행액임.

- ▶ 중리지구 경관가로 조성사업
 - '05.03.10.일 착공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06.06.30.일 공사준공 예정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업비 이월액임.

⌘ 검사자 의견

- 중리 다목적 캠핑장 조성에 법규정에 따라 조속히 환경성 검토 및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추진하고,

- 노성산 등산로 및 야생화공원 조성사업도 공원 내 지역이므로 환경, 교통 재해 영향 평가를 득하여 추진하기 바람.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 호 : 23
- 제 목 : 후평 재해 위험지구 추진사업
- 현 황
 - ▶ 가옥보상 3동
 - ▶ 사업비 : 167,800천원
- 문제점(개선사항)
 - ▶ 실 건물 소유주와 등기부 상 소유주가 상이하여 보상지연

ⓘ 검사자 의견

- 본 건은 3년차 사업으로 이해 당사자와 협의
- 장마철 이전에 완료하기 바람.
- ※ 보상 후 토지 활용방안 강구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 호 : 24
- 제 목 :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조치 미흡
- 현 황
 - ▶ 읍면별 체납액 현황(2005.1.1~12.31)

(단위 : 천원)

합계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40	31,823	139	4,092	49	3,634	48	978	141	5,543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0	5,352	65	3,978	111	4,420	237	4,826

○ 문제점(개선사항)

- ▶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및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평창군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징수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획대비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업무담당부서의 관리 의식부족으로 미수액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

※ 검사자 의견

- 미수액관리 및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납부이행촉구
- 고액체납자 현지추적 채권확보 및 방문 납부독려 확행
- 평창군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체납액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첨부>

1. 읍·면별 체납자 명부
2.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지독려 현황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호 : 25
- 제목 : 올림픽타운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연 발주
(홍보관, 이벤트장, 외국인 전통목걸이 체험장,
축제의 장, 만남의 광장)
- 현황
 - ▶ 위치 : 도암면 횡계1, 8리 일원
 - ▶ 계약 : 2005.11.29.일 (삼경기술용역단과 계약 체결)
 - ▶ 용역비 : 2억원(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 ▶ 용역기간 : 2005.11.29. ~ 2006.09.24.(300일간)
 - ▶ 향후계획 : 5차례의 보고회(초안, 중간, 최종)개최 후 최종 성과품 납품
- 문제점(개선사항)
 - ▶ 향후 5차례의 보고회 후 납품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발주 지연으로 부실한 용역성과물 납품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됨.
 - ▶ 기본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이 필요함.(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 검사자 의견

- 용역수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내실 있는 용역수행
- 올림픽 실사대비 용역 활용방안 철저 강구
-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국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기회부여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 호 : 26

- 제 목 : 마지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 현 황
 - ▶ 마지 보건진료소 178.66㎡ 신축부지 선정
 - ▶ 당초 마지리 339-1 전1947㎡ 중 990㎡로 선정하여 경계측량 실시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진입도로 사용불가
 - ▶ 도둔리 37-25 전990㎡로 변경하여 건축협의 후 추진
 - ▶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진입로 31번국도 도로점용허가 신청

- 문제점(개선사항)
 - ▶ 정선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도로 점용관련 미 이행(별첨) 5건에 대하여 조치 후 재신청 요구.

☞ 검사자 의견

- 마지 보건진료소 추진 위원회 명의로 도로점용허가 신청.
- 건축부지로 취득하여 등기이전 후 조속히 사업 착공.
- 미 이행 5건에 대하여 실과소 및 미탄면장은 빠른 시일 내 처리되도록 이행 촉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1	세출예산 비목 중 전액 불용액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수립 후 집행사유 미 발생 등의 사유로 전액불용 처리한 예산이 20건 발생 ○ 예산집행사유가 미 발생하였다면 추가 경정예산을 통하여 삭감 조정하여 시급한 예산에 재편성 운영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수립 후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없도록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여 추후 예산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즉시 삭감, 조정하도록 하겠음. 	전실과소
2	세출예산 집행 잔액 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변경취소, 집행미사유 등으로 발생한 예산잔액이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3.34%가 발생하였으나 재투자 되지 않고 있음 ○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하여 발생한 예산잔액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편성시 삭감 조정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건전 재정운영 노력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잔액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 예산편성시 삭감, 수정을 통하여 필요한 군정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음 	전실과소
3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과다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이월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42%로 증가된 148건이 발생 ○ 자체사업비가 최종 추경예산에 계상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하며, 이월사업은 주요사업심사분석을 통해 면밀한 검토 후 대책 수립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회계연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보조시기 지연으로 이월사업이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도비사업비를 조기확보하는 한편 자체사업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상황점검 등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전실과소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4	2005년 일반회계 이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이월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40건이 증가한 144건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21.7%가 이월되었음. ○ 물가인상 증감에 따라 3개월마다 사업비 계상 및 행·재정상의 손익을 감안 조기 착공 및 시공을 해야 한다고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조기착공 및 마무리로 이월사업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전실과소
5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단체의 정산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단체의 경우 정산서 작성 시 일자별 지출금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보조금 통장과 명세서가 일치하지 않음. ○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는 지급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장사본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정산서 제출 시 보조금통장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겠음 	전실과소
6	읍면 사업예산을 군 본청에 예산계상 후 재배정처리로 능률성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이 적기에 진되도록 해야 사업의 적기집행은 물론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것임. ○ 본 지적 사항은 과년도에도 지적되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증가 추세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추진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해당 실과의 검토를 거쳐 가급적 읍면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기획감사실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7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및 적정집행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군청과 읍면에 동일목적으로 이중 계상되는 것과 규모가 큰 사업비 집행은 예산운영상 지양되어야 함.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본 예산 편성 후에 수시 발생하는 생활민원사업비로 집행하도록 지침 마련이 요구됨 ○ 5천만원이상 사업비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 비도를 확정 집행함이 타당하며, 사업비 집행이 선심성 예산으로 투영될 수 있으므로 사업선정에 적정성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편성이후 사전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주민불편 사안이 발행하였을 경우 신속히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비로서 ○ 중·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및 추경에 반영토록 업무추진할 계획이며 3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만 예산이 집행되도록 업무추진 할 계획임 ※ 읍·면장 사업비는 2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만 집행하도록 연초 집행지침을 시행한바 있음. 	기획감사실
8	사회단체 지원금 집행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단체가 요청한 사업비 중심의 결정된 사업을 미실시 했거나 사업비 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음. ○ 지원 요청액 심의 결정시 객관성 확보와 면밀한 검토가 요청되며, 지원 단체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지원기준도 재검토가 요청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 등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기획감사실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9	목공예단지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예산 계상으로 시기일실 및 현 예산으로는 사업 시행이 어려움. ○ 월정사로 위탁(계획서 제출 요구)시행 협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시군 설치·운영사례 및 우리군 관련업체의 운영실태 파악 후 세부 사업추진방안을 수립계획 - 월정사로 위탁방안 등 	기획감사실
10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처분 조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까지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는 총2,327건 발생되었으나 징수실적은 21%에 불과함 ○ 관리부서의 과도한 업무로 자동차압류 등 조치 후 납부독려 및 징수관리가 소홀함으로 자동차관리부서 증원 및 업무전문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별로 체납자 독촉고지서 일괄발송 - 8,883건 / 1,398,419천원(상반기) ○ 시효소멸 등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 고액체납자(30만원이상) 특별관리 - 3,430건 / 1,118,432천원 	민원봉사과
11	지방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한 조치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제30조의3제1항에의거 소멸시효시 지체없이 결손처분 할 것. ○ 미수액 관리 및 지속적인 현지추적 조사 독려로 조기납부 이행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해당실과별 책임징수제 실시함. - 총괄은 해당실과에 고액체납자자료 통보하며, 해당실·과는 지속적 관리 실시 ○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는 결손처분을 해당실·과에서 실시. 	재무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12	체납액(기타잡수입)에 대한 관리소홀	<p>○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납부독려 요망.</p>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잡수입 체납액 현황 ></p> <table border="1" data-bbox="600 486 1193 882"> <thead> <tr> <th>구분</th> <th>체납자</th> <th>금액(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3,461,900</td> </tr> <tr> <td>환경보호과</td> <td>이천수</td> <td>798,730</td> </tr> <tr> <td>산림과</td> <td>이광준</td> <td>240,140</td> </tr> <tr> <td>산림과</td> <td>안선옥</td> <td>218,650</td> </tr> <tr> <td>산림과</td> <td>(주)보광</td> <td>71,460</td> </tr> <tr> <td>봉평면</td> <td>형용산</td> <td>1,975,000</td> </tr> <tr> <td>도암면</td> <td>도암면사무소</td> <td>157,920</td> </tr> </tbody> </table>	구분	체납자	금액(원)	합계		3,461,900	환경보호과	이천수	798,730	산림과	이광준	240,140	산림과	안선옥	218,650	산림과	(주)보광	71,460	봉평면	형용산	1,975,000	도암면	도암면사무소	157,920	<p>○ 체납건수별 처리계획</p> <table border="1" data-bbox="1249 359 1912 1382"> <thead> <tr> <th>체납자</th> <th>처리계획</th> </tr> </thead> <tbody> <tr> <td>이천수</td> <td>○ 체납자 이천수씨는 ,04년 12월 3일 부정수급자로 결정 -보장비용 1,198,090원 징구 ○ '05년 1월부터 '06년 5월 현재 까지 6차에 걸쳐 납부독촉 ○ 미납액(798,730원)에 대하여 꾸준히 납부독려하여 징수하겠음</td> </tr> <tr> <td>이광준</td> <td>납부독촉 후 압류하고 지속적 관리 예정임.</td> </tr> <tr> <td>안선옥</td> <td>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조립비 부과건으로 사업포기하여 취소할 예정임(감액대상임)</td> </tr> <tr> <td>(주)보광</td> <td>동일건수가 이중부과되어 감액함.</td> </tr> <tr> <td>형용산</td> <td>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에 따른 2회의 촉구를 하였으나 미납부함에 따라 촉구후 압류 및 경매조치할 계획임.</td> </tr> <tr> <td>도암면사무소</td> <td>유천1리 경로당으로 동일건수가 이중부과되어 감액함.</td> </tr> </tbody> </table>	체납자	처리계획	이천수	○ 체납자 이천수씨는 ,04년 12월 3일 부정수급자로 결정 -보장비용 1,198,090원 징구 ○ '05년 1월부터 '06년 5월 현재 까지 6차에 걸쳐 납부독촉 ○ 미납액(798,730원)에 대하여 꾸준히 납부독려하여 징수하겠음	이광준	납부독촉 후 압류하고 지속적 관리 예정임.	안선옥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조립비 부과건으로 사업포기하여 취소할 예정임(감액대상임)	(주)보광	동일건수가 이중부과되어 감액함.	형용산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에 따른 2회의 촉구를 하였으나 미납부함에 따라 촉구후 압류 및 경매조치할 계획임.	도암면사무소	유천1리 경로당으로 동일건수가 이중부과되어 감액함.	재무과
구분	체납자	금액(원)																																								
합계		3,461,900																																								
환경보호과	이천수	798,730																																								
산림과	이광준	240,140																																								
산림과	안선옥	218,650																																								
산림과	(주)보광	71,460																																								
봉평면	형용산	1,975,000																																								
도암면	도암면사무소	157,920																																								
체납자	처리계획																																									
이천수	○ 체납자 이천수씨는 ,04년 12월 3일 부정수급자로 결정 -보장비용 1,198,090원 징구 ○ '05년 1월부터 '06년 5월 현재 까지 6차에 걸쳐 납부독촉 ○ 미납액(798,730원)에 대하여 꾸준히 납부독려하여 징수하겠음																																									
이광준	납부독촉 후 압류하고 지속적 관리 예정임.																																									
안선옥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조립비 부과건으로 사업포기하여 취소할 예정임(감액대상임)																																									
(주)보광	동일건수가 이중부과되어 감액함.																																									
형용산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에 따른 2회의 촉구를 하였으나 미납부함에 따라 촉구후 압류 및 경매조치할 계획임.																																									
도암면사무소	유천1리 경로당으로 동일건수가 이중부과되어 감액함.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13	군 금고 검사 미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제120조 2항 규정 및 평창군 금고 지출 대행점 계약 제9 조(금고검사)에 의거 년1회 이상 또는 수시 금고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세 입·세출결산 검사일 현재 미 이행 상 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회계년도 평창군 금고 및 수납·지출 대행점 검사계획 - 검사기간 : 2006. 6월중 - 검사대상 : 농협중앙회평창군지부 외 27개소 - 검사내용 : 금고 및 수납·지출대행점 약정사항 준수여부 	재무과
14	수석테마공원 조성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점용 : 05.11.24. 허가 ○ 공사계약 : 05.12.14. ○ 착공 : 06.03.20.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완료 : 05.10.31. ○ 하천점용 협의 완료 : 05.11.24. ○ 공사계약 : 05.12.14. ○ 공사기간 : 05.12.16.~06.09.13. (준공예정일 : 06.09.13.) 	문화관광과
15	덕거 연극인촌 달빛극장 건립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위탁운영자의 디자인관련 의견 수렴과 실시설계용역의 지연으로 사업이 이월됨. ○ 공사 조기발주가 이행되지 않았고 당초예산에 세워진 사업을 하반기에 발주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위탁운영협약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06년도 공연 이전 달빛극장 건립 완료 (06.07.31. 준공예정) 	문화관광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16	사회복지기금(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출연금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중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약5%로 타 출연비율보다 불합리함.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출연을 증액하여 저소득주민 자녀들이 다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계와 협의하여 출연금 확보 (1억5천추가 확보) ○ 매년 5천만원씩 출연금 확보 (2007년부터 2010년) 	환경복지과
17	대화주민 건강관리센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에 대한 지역민의 증설 요구로 이월된 사업 ○ 계속사업 추진하여 조기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사업기간 :2005.10.4~2006.7.28 	환경복지과
18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예산계상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에 비해 부담금 납부기간이 만료된 업체로 인해 판매수입 5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를 예산편성 시 종전대로 계상하므로 세수결함 사유를 가져옴. ○ 예산편성 시 관련부서의 세입추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부터 보광휘닉스파크, 용평리조트 폐기물부담금 예산계상 제외 ○ 2006년 폐기물부담금 5억원 1회추경시 삭감. 	환경복지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19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비 집행 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소송 등으로 미탄 쓰레기매립장 공사가 지연되어 기존 대화 매립장을 재사용하기 위해 20억원의 준비가 낭비됨 ○ 미탄 쓰레기처리장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여 의회승인을 받은 지원사업비가 대화쓰레기 매립장 사업비로 부당하게 사고이월 하였음. ○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부당하게 사고이월 처리하여 예산을 편법 운영한 것은 당연 시정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대화매립장 주변지역에 지원된 10억원은 미탄매립장지원을 위한 예산이었으나, ○ 대체 매립장이 없는 상황에서 대화매립장사용기간연장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의회에 사전설명하고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차후 이와 같은 예산 집행시는 반드시 의회승인을 득하고 집행할 계획임. 	환경복지과
20	진부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소유주와 미 협의 및 감정가격 인상요구 ○ 지속적인 협의로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불편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토록 노력하겠음 	지역도시과
21	봉평면 오지종합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미 보상 16필지 중 일부 오지종합개발 사업비로 보상 집행 계획이며, 평가 감정도 03년에 시행되어 06년도에 재평가 감정해야 함 ○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지장물 및 토지 보상비는 오지종합개발 사업비로 집행함은 부당하다 사료됨. ○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예산 반영보상비와 재평가 감정수수료를 지출해야하며 토지 보상비도 상승될 것으로 우려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평면에 계상된 오지종합개발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진중인 도로개설 부족분에 우선 집행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음. 	지역도시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22	평창 소도읍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리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착수 이전에 하천점용협의를 완료 하여 추진하여야하나 관련부처 협의 절차 미비로 사업추진이 지연됨. - 법규정에 따라 조속히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추진 ○ 노성산 등산로 및 야생화공원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내 지역이므로 환경, 교통 재해 영향 평가를 득하여 추진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리다목적 캠핑장 조성공사는 '05.10.31일 원주 지방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완료 하였으며, 하천점용 협의를 '06.4.27일 완료하여 2006.5.5일 사업을 재개하여 현재 공사 추진중으로 '06.8월 준공예정. ○ 노성산 종합개발 기본계획 재해 및 교통영향평가를 현재 추진중임 	지역도시과
23	후평 재해위험지구 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 건물 소유주와 등기부 상 소유주가 상이하여 보상지연 ○ 본 건은 3년차 사업으로 이해 당사자와 협의하여 장마철 이전에 완료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서를 평창읍 사무소에 제출함. ○ 차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사업추진예정 	재난안전관리과
24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조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대비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업무담당부서의 관리 의식부족으로 미수액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 ○ 미수액 관리 및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납부이행촉구와 고액체납자 현지추적 채권확보 및 방문 납부독려 확행 ○ 평창군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체납액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 ○ 1차적으로 담당정수장별로 체납액 납부독려 ○ 2차적으로 3월이상 체납자에 대한 최고서를 발부후 최고일 까지 납입하지 않을시 최고기일5일경과후 단수조치 (정수장별 교체하여 단수 실시) ○ 정수후 체납액 미납시 체납처분을 위하여 채권확보 ○ 이후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수장 근무자인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관리 ○ 자동이체 납부를 위하여 검침시나 고지서 배부시 이체신청 	상하수도사업소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25	올림픽타운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연 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5차례의 보고회 후 납품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발주 지연으로 부실한 용역성과물 납품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며, 기본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이 필요함. ○ 용역수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내실 있는 용역수행 및 올림픽 실사대비 용역 활용방안 철저 강구 ○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국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기회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타운조성기본계획용역검토 TF팀 구성 운영 ○ 올림픽 실사단에게 조감도 등 제시로 유치 의지 각인 ○ 올림픽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동계스포츠 선진국(동유럽) 벤치마킹 실시 	지역도시과
26	마지보건진료소 신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선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도로 점용관련 미 이행 5건에 대하여 조치 후 재신청 요구. ○ 마지 보건진료소 추진 위원회 명의로 도로점용허가 신청하여 건축부지로 취득하여 등기 이전 후 조속히 사업 착공 ○ 미 이행 5건에 대하여 실과소 및 미탄면장은 빠른 시일 내 처리되도록 이행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점용관련 미이행사항 조치협조(관련부서) : 2006.05.10 ○ 도로점용 허가신청 : 2006.05.12 ○ 도로점용 허가 : 2006.05.19 ○ 건축협의를 : 2006.05.29 ○ 시설공사 입찰공고 : 2006.05.31 	보건의료원